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50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조배숙·박준태·김승수

임이자 · 곽규택 · 우재준

송석준·고동진·박성훈

김상훈 • 이인선 • 이철규

이달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지난 2009년부터 2024.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 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300억원(7.25%)에 불과함.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고도화·지능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가능하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 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 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 이하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
	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
	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
	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
	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
	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 및 약
	사법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
	찰관의 직무를, 5급 이하의 직원
	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
	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
	<u>(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u>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
	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u>범죄</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